

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997년 5월
사회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4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제출
및제출자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5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66회 서구의회(임시회) 회기중
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(1997년 5월 21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이강수)

가. 제안사유

-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
- 법률에 맞추어 기금조성재원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 제7조(장학금의조성및관리) 제1항중 “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”을 삭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광태)

- 본 조례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('95. 12. 30 법률 제5126호 공포)이 '96. 7. 1 시행되어
- 자치단체에서 각종 기금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기금조성재원을 “주민성금”, “기부금”, “기탁금”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(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)의 규정에 위반되어
- 조례 제7조 제1항의 내용중 “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”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.
-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처리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타 수입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) ①장학기금 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 회계 지원금과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 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수입에 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) ①장학기금 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 회계 지원금과 기타수입에 의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